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6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김현정·박홍배·이기헌

부승찬 • 전재수 • 손명수

이개호・정태호・김기표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채무자회생법")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,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'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사람'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,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음.

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

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제1항제1호"를 "제1항제1호 또는 제3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임원의 자격요건) ① 다음	제5조(임원의 자격요건) ①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			
지 못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	<u><삭 제></u>		
되지 아니한 사람		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	2		
된 사람이 <u>제1항제1호</u> 부터 제8	<u>제1항제1호 또는 제3</u>		
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<u>ŏ</u>		
게 된 경우에는 그 직(職)을 잃			
는다. 다만, 제1항제7호에 해당			
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			
아니한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